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환경 분석

- 투자법을 중심으로 -

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특집]

2012년도 제1호는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협력 강화 대상으로 주목되고 있는 신흥시장국 MIKT(Mexico, Indonesia, Korea, Turkey)에 대한 투자관련 법제정보로 구성합니다.

I. 서론

II. 외국인투자법의 체계

1. 외국인투자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2. 외국인투자법 체계

III. 1993년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

1. 투자금지 및 제한 부문
2. 부동산 투자 제한
3. 외국인투자위원회
4. 외국인투자자 제재

IV.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

V. 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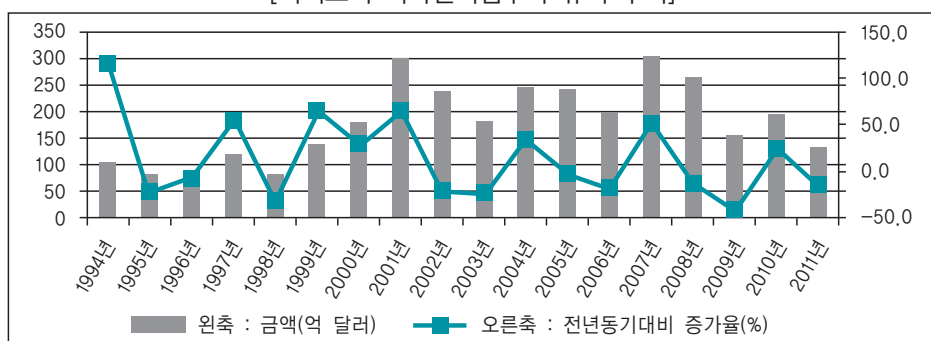
I. 서론

멕시코는 1980년대 외채위기를 계기로 통신, 광업, TV방송, 수산업, 자동차, 철강 등의 분야에서 민영화를 단행하면서 외국인투자에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으나, 실질적으로는 1990년대 초반부터 개방 및 자유화정책을 근간으로 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힘썼다. 특히 기존에 멕시코 내국인 및 국내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던 다양한 경제활동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을 허용하여 외자를 유치하려는 투자법을 활용해 무역 및 투자 장벽들을 폐지하였다. 더욱이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하여 유럽연합, 일본 등 45개 국가와 체결한 13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함으로써 매력적인 투자진출 대상국으로 변모했다. 이외에도 멕시코는 한국, 중국을 포함한 27개국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 인구 약 1.2억 명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규모를 지닌 내수시장, 풍부한 자원(에너지, 광업, 생물다양성) 등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상당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 등 다른 국가들이 제공하는 투자 유치 인센티브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NAFTA가 출범한 1994년을 전후하여 미국경제가 장기 호황을 누린 2001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비록 미국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한 2002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는 다소 줄었으나 2004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2008년 이후 최근 4년간 감소 추세를 기록 중인 외국인직접투자는 멕시코 경제의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이 크다. 최대 투자국이면서 소비시장인 미국과 유럽지역 경제가 침체와 위기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지역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중요한 외국인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멕시코의 다양한 투자환경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체계와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을 대신하여 외국인투자법이 지닌 주요 핵심을 정리하고, 2012년 예상되는 정권교체가 실현될 경우 가능한 투자환경 변화를 전망해 본다.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추이]



자료: 멕시코 경제부.

II. 외국인투자법의 체계

1. 외국인투자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멕시코의 외국인투자법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멕시코의 역사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근대적인 투자법이 탄생하기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대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즉, 멕시코 정부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입장은 역사적으로 일관된 것이 아니었고, 특정 정부의 이념 특성과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변혁이나 투자법 제정 혹은 개정에 따른 시기 구분이 필요하다. Twomey(1993)는 멕시코 외국인투자정책을 △멕시코혁명(1910년) 직전 시기, △혁명부터 1944년 법률 제정까지, △1944년부터 1989년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제정까지, △1989년부터 현재까지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설명하였다.

첫째, 독립이후 혁명 직전까지 멕시코 정치는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 간의 대립으로 점철되었는데, 국부를 장악했던 보수주의자가 식민시대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에 거부감을 보인 반면에 자유주의자는 석유, 광업, 철도, 농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유치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적 입장은 1910년 혁명 발생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둘째, 1910년 멕시코혁명 발발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 증대와 동시에 외국인투자정책을 비롯한 각종 경제정책에 민족주의 성향이 강화되었다. 즉, 1917년 헌법은 토지의 국가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토지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은행 설립(1925년)을 통한 금융정책 국가 장악과 석유산업 국유화(1938년) 등의 모태가 되었다. 그리고 세금 인상, 노동운동 지지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반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수입대체산업화 발전전략이 시작되는 시대였던 관계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전면적인 거부감이 표시되기 보다는 업종별로 선별적인 정책이 실시되었다. 즉, 자원을 비롯한 전략업종은 보호했지만 일부 제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개방하거나 장려하기도 했다.

셋째, 1944년 외국인투자법은 독립된 법률로는 최초의 사례이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멕시코로 유입된 도피 자금을 통제하기 위한 비상조치로 신설되었지만, 향후 개방정책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다소 규제적인 외국인투자정책의 근본이 되었다. 규제적 특성은 기업의 멕시코화(mexicanization)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이와 같은 규제적 특성은 최초의 현대적 법률로 평가되는 1973년 외국인투자법에서 강화되

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외채위기를 계기로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이 폐기되고 경제 정책 기조가 개방과 자유화로 선회되자 외국인투자정책도 규제에서 자유화로 바뀌었다. 즉, 1986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의 가입을 시작으로 멕시코는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단행하였고, 외국인투자 분야에서의 자유화의 상징은 1989년 시행령과 1993년 투자법이었다.

2. 외국인투자법 체계

멕시코에서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삼고서 독자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투자관련 법률은 외국인투자법(LIE: Ley de Inversión Extranjera), 투자보장협정, FTA 투자규정이다. 외국인투자법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인 반면, 투자보장협정과 FTA 투자규정은 쌍무적으로 적용된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인 투자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73년 규제적인 투자법 시행 이후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외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멕시코는 1976년에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정부의 경제정책은 다소 개방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로 외국인투자정책에서는 1989년에 1973년 투자법의 시행령이 발표되었지만, 투자법과는 다른 개방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상호간에 충돌과 모순이 발생하였다. 개방정책을 시행하면서도 투자법을 개정하기보다 규제적 특성을 지닌 투자법과 상충하는 시행령을 발표한 배경에는 당시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기가 어려웠던 배경이 작용했다. 이러한 법률과 시행령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NAFTA 출범에 앞서 투자규정의 조화를 목적으로 멕시코 정부는 1993년에 투자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1973년 외국인투자법을 대체한 1993년 투자법은 명확한 법규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투자환경의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투자제한 부문의 추가개방을 목적으로 1995년, 1996년, 1999년, 2001년, 2006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08년에 1993년 투자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1989년 투자법과 함께 발표된 시행령 또한 폐기되어 1998년 시행령(Reglamento de la Ley de Inversión Extranjera y del Registro Nacional de Inversiones Extranjeras)으로 대체되었고, 2009년에는 법인설립 신청 요건, 투자위원회 활동, 등록절차 등 일부 규정에서 개정이 있었다.

이 외에 외국인투자와 관련이 있는 제도 및 법률로는 보세가공수출(마킬라도라)산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 ‘국경산업화 계획(1965년)’, ‘마킬라도라법(1983년)’

및 ‘新마킬라도라법(1989년, 1998년 일부 개정)’, ‘기술이전법(1973년)’, ‘발명 및 상표에 관한 법(1976년)’ 등이 있다.

멕시코는 1993년 투자법을 제정한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이를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에 주력했는데, 이러한 결과 현행 헌법 및 특별법에 규정된 일부 외국인투자 금지 및 제한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 100%의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즉,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멕시코 기업의 지분을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고,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 규정을 이행 및 감시하는 정부당국은 외국인투자위원회(CNIE: Comisión Nacional de Inversiones Extranjeras)이고, 투자자 등록 및 통계정보 처리는 외국인투자등록소(RNIE: Registro Nacional de Inversiones Extranjeras)가 담당한다.

Ⅲ. 1993년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

멕시코에서 현재 운영 중인 1993년 투자법(2008년 최종 개정)은 미국 및 캐나다와 체결한 NAFTA의 투자법규에 대부분 일치되어 있는데, 총칙인 제1편을 포함한 8개 편, 39개 조, 임시규정 및 개정에 따른 관련법 개정 임시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외국인투자제도 및 법률과 관련하여 관심도가 높은 투자금지 및 제한 부문, 부동산 투자,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CNIE), 외국인투자자 제재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투자금지 및 제한 부문

외국인투자법(이하 LIE) 제1편 제2~3장 제5~9조는 100%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부문을 제외한 투자금지 부문, 외국인 지분 취득한도 제한 부문, 그리고 CNIE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부문들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헌법 규정처럼 LIE 제5조는 석유 및 그 외의 탄화수소물, 기초 석유화학, 전력, 원자력 발전, 방사성 광물, 전신, 무선 전신, 우정 사업, 화폐 발행, 동전 주조, 항구·공항 및 헬기장의 관리·감독·감시, 기타 관련법 조항에 따른 특별 규정 사업 등 전략사업을 국가독점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제6조는 택배나 소포 서비스를 제외한 국내 여객, 관광객, 화물의 육상 운송,

휘발유 소매 및 액화석유가스 유통, 방송서비스 및 케이블 TV를 제외한 기타 라디오 및 TV 방송, 개발은행법 적용을 받는 개발금융기관, 관련법 조항에 명시된 전문 및 기술서비스 제공업을 멕시코인 또는 외국인 배제 정관을 채택한 멕시코 법인이 독점하는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제7조는 외국인투자의 지분 참여를 제한하는 경제활동 및 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협동생산회사에는 최대 10% 지분참여 허용되고, 국내 항공운송·항공택시·특수 항공 운송업에는 최대 25%까지 지분을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 보증회사, 환전소, 증권시장법(LMV) 제12조의 투자전문회사, 퇴직연금 운용회사, 산업 및 광업활동을 위한 폭발물의 구매 및 사용과 산업 및 광업활동 소비용 폭발물 혼합 제조를 제외한 폭발물·총기류·총탄 등의 제조 및 유통, 국내용 신문 인쇄 및 출판, 농업·축산업·임업용 토지소유권을 지닌 기업의 'T' 주식, 양식업을 제외한 내륙·해안·경제제한지역에서의 어로, 종합 항만 관리, 선박의 국내수로이용 관리, 선박·항공기·육상장비를 위한 연료 및 윤활유 공급, 통신법 제11~12조에 규정된 양허 회사 등에는 최대 49%까지 지분 참여가 허용된다.

넷째, 제8조는 CNIE의 승인으로 49% 이상 100%까지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경제활동 및 기업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운항 선박의 예인·정박·접안을 위한 항만서비스, 고속해운회사, 공용 비행장 면허·양허 회사, 민간의 유치원·초·중·고·대학 및 그 이상의 복합교육서비스, 법률서비스, 신용정보회사, 유가증권평가회사, 보험대리점, 이동전화서비스, 석유 및 석유 파생물 수송도관 건설, 유정 및 천연가스정시추, 철도 부설·운영·개발 및 공공철도운송서비스가 이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제9조는 외국인투자가 지분 49% 이상으로 멕시코 기업에 참여할 경우 허가요청 시점의 기업 자산총액이 특정 금액을 상회할 경우 CNIE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산규모는 매년 CNIE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이 LIE는 다양한 경제활동 및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 혹은 제한하고 있지만, FTA를 비롯하여 멕시코가 체결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이 매우 어려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문을 제외하고 지분참여 규제를 받고 있는 부문들은 협정에 따른 추가 개방 일정을 따르거나 필요시 의회에서의 정치적 합의를 통하여 항시 개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 부동산 투자 제한

LIE 제10~14조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광산 및 수자원 개발, 제한지역 부동산

소유권 신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배제 조항을 명시한 정관을 갖춘 멕시코 기업 혹은 헌법이 규정하는 협약을 공표하는 멕시코 기업은 멕시코 국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회사의 정관이 헌법 규정에 따른 협약을 포함할 경우 ① 전략적 제한지역(미-멕시코 국경 100km 이내 지역 및 해안 50km 이내 지역)에 위치한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권을,¹⁾ 그리고 ② 제2편 2장의 제한지역 부동산 신탁제도 규정에 따라 제한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부동산 소유권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제한지역 외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국내에서 광산 및 수자원의 탐사 및 개발 양허를 획득하려는 외국인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외무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완전히 제한지역 외부의 지자체에 위치하거나 국내에서 광산 및 수자원의 탐사 및 개발 양허를 획득하려는 경우 외무부에 요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보를 통해 거부되지 않는 한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취득하려는 부동산의 일부가 제한지역 지자체에 위치할 경우 외무부는 허가 여부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제한지역 주거용 부동산 취득은 정부의 허가아래 멕시코 국민과 외국인 배제 정관을 갖춘 멕시코 기업들처럼 외국인 배제 정관을 갖추지 않은 멕시코 기업과 외국 법인 및 자연인도 제11~14조의 신탁제도와 제5편 제18~22조의 중립투자(neutral investment) 규정을 통하여 가능하다. 즉 제한지역 부동산 소유자가 은행에 신탁제도를 통해 부동산을 판매하고 외국인투자자가 이를 구입하는 방식인데, 은행이 실질적인 소유자이지만 외국인투자자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여 판매, 명의 이전 등의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는 달리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분쟁에 휩싸일 수 있는 불안한 투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3. 외국인투자위원회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실질적인 인허가 등 주요 업무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CNIE)에 의하여 수행된다. LIE 제6편 제23~30조는 CNIE의 구성, 권한,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제2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내무부, 외무부, 재무부, 사회개발부, 환경부, 천연자원수산업부, 에너지부, 상공부, 교통통신부, 노동사회복지부, 관광부 장관으로 구성되고, 대행자로 각 부처 차관이 임명된다. 이 외에 투자와 관련이 있는 민

1) 이 경우 매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무부에 취득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간기업 및 사회단체들의 대표들을 위원회 회의에 초청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6개월마다 개최되고, 관련 의제는 다수결로,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에 의하여 결정된다. 위원장은 상공부장관이 담당하고, 기능을 위하여 사무국과 상임소위원회를 둔다(제24조).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부 각 부처로부터 파견된 1인 공무원들로 구성된 상임소위원회는 분기별로 회합을 갖는다.

CNIE의 주된 권한은 △ 외국인투자정책 공포 및 투자촉진 수단 마련, △ LIE 제 8~9조에 규정된 업무 수행 결의, △ 정부기관을 위한 외국인투자 자문기관 역할, △ 결의안을 통한 외국인투자법 및 시행령 적용 기준 설정 등이다(제26조). 그리고 사무국은 CNIE를 대리하여 CNIE의 결의안을 통지하고, CINE가 위탁한 조사를 실시하며, 의회에 분기별로 외국인투자동향 보고서를 제출한다(제27조). 의회에 보고되는 CNIE의 분기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보고서는 멕시코 경제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개방되는데, 투자 국가별, 업종별, 지방별 통계자료는 국내외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투자 허가 요청이 있을 경우 CNIE는 외국인투자 시행령 규정에 따라 45일 이내에 고용 및 근로자에 대한 영향, 기술적 기여, 환경관련 규정의 이행, 국가 생산경쟁력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 허가 요청에 대하여 무역을 왜곡시키지 않는 요건을 부과할 수 있고,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를 통한 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4. 외국인투자자 제재

제한 업종의 경우 CNIE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투자자로 등록되면 내국인 및 내국기업과 동등하게 대우받지만, 한편으로는 동등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대표적인 의무로는 사전적인 투자 허가 및 등록, 외국인투자법 및 시행령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가 시행될 경우 매년 재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필요시 분기별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LIE 규정에 위배되어 투자가 실시될 경우 투자허가는 취소될 수 있고, 무효가 선언된 협약, 사회협약, 정관 등은 당사자 간은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또한 LIE 및 시행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이 매우 엄격한 수준의 제재를 받는데, 필요한 세부 절차는 LIE 규정을 따른다. 첫째, CNIE 결의안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투자가 사전 허가 없이 시행되었을 경우 1,000~5,000명의 임금²⁾이

2) 벌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위반 시기에 연방구(Districto Federal) 지역에서 적용되는 일일 최저임금이다.

벌금으로 부과된다. 둘째, 외국법인이 사전 허가 없이 멕시코 국내에서 일상적인 상업 활동을 수행할 경우 500~1,000명의 임금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셋째, 중립투자를 규정한 LIE 및 시행령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300명의 임금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넷째, 투자등록 등기, 보고, 통지 등의 의무에 대한 누락, 지연 보고,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의 경우에는 30~100명의 임금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다섯째, LIE 제2~3편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 자연인 및 법인, 외국인 배제 규정을 포함한 정관을 갖추지 않은 멕시코 기업이 제한지역에서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을 시도할 경우 범법자에게는 매매 시도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LIE 및 시행령에 대한 기타 위반사항에도 100~1,000명의 임금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IV.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

비록 LIE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투자자들의 투자처 결정에 중대하게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멕시코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다른 국가와 차별적인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현존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내국 및 외국기업에 동등하게 부여되는 특성이 있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성을 찾기가 힘들다. 즉, 투자유치 및 장려를 목적으로 세제 인센티브가 제공되던 초기와는 달리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과 고용창출 및 근로자 능력 제고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차별성을 더욱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와 관련한 인센티브로는 특정 산업(농림수산업, 출판업 등) 및 지역(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제외)에서의 투자설비 감가상각률 적용에 따른 각종 조세 부담 경감과 특정 산업(농축산업, 광업) 디젤유 유류세 면제가 남아 있다. 금융지원으로는 국영금융기관 신탁기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특별융자프로그램이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촉진제도와는 별도의 지방별 지원제도가 경쟁적인 투자유치 환경에서 차별적으로 마련되어 제공되고 있다. 지방정부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인센티브는 교육훈련비 지급, 지방세인 급여세 감면, 창업단계에서 지급해야 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 감면, 투자와 관련한 종합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는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투

자규모, 업종, 경제적 파급력, 그리고 투자자의 교섭력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투자처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차별성이 없는 중앙정부 지원보다는 지방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현장 밀착형으로 파악하고, 서면계약 형태로 인정받는 노력이 요구된다.

V. 평가 및 전망

멕시코 비거주자가 실시하는 직·간접투자는 거시 경제적 안정, 내·외국기업의 현대화, 고용창출, 내수시장 강화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하였다. 멕시코에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고, 특히 안정적인 외국인투자 환경이 구축된 근간에는 LIE가 있었다. LIE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내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규정을 구축하여 외국인투자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LIE는 외국인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참여를 일정 제한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동반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LIE는 외국인투자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국가 및 내국인 독점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제한적으로 지분 참여가 허용되는 업종들을 각각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특징을 지녔다. 또한 외국인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와 법률 및 시행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동시에 규정하였다. 특히 중앙정부 대부분의 부처가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투자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특성을 보였다.

한편, LIE는 외국인직접투자와 함께 간접투자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지분 제한 투자업종에 은행업, 보험·보증업, 연기금, 증권업 등 금융 산업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지닌 멕시코의 LIE는 2012년 7월 예정된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수차례에 걸친 개정 사례로 볼 때 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의 추가적인 개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전술한 바 있듯이 멕시코는 국내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그리고 대외적으로 체결한 각종 협정의 완전한 이행과정에서 투자업종의 추가적인 개방을 지속해 왔다. 최근 멕시코가 논의해온 주요 투자개방 대상 업종은 전력과 석유산업이다. 경제성장과 수요 확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 공공투자 부족과 개발기술 낙후에 따른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의 필요성은 전력 및 석유산업의 개방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